의안 1364 버호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토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연월일 : 2017. 5. 31. (수)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2017. 6. 1.(목) 라. 위원회심사 : 2017. 6. 9.(금)

#### 개정이유

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 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 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명 나. 구 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성: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11개 시·군·구)

다. 주요사업

1)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2)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3)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라. 임원구성: 회장 1명, 부회장 2명마. 회 비: 연회비 특별히비(피어에 메리 버트 기관 비: 연회비,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 4.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

## 5. 검토의견

-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자치단체간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2006년 12월 15일부터 회칙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 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부합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 구
- 규약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 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 면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